

변경 내용

1. 정정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2. 대상 투자신탁 및 변경일

투자신탁명	변경일
삼성당신을위한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010-01-27

3. 투자설명서 변경사항 : 이익분배 및 세제혜택 관련 문구 반영 등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자체 투자위험 등급 기준>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 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자체 투자위험 등급 기준> 주1) - 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 이하)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글로벌 채권 등인 경우 글로벌 신용등급체계는 국내투기등급채권에 적용되는 국내 신용등급체계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등급체계에서는 투기등급이지만 국내신용등급체계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투자등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내용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법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p>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 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p>

<p>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1) ~ 2) 생 략</p> <p>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 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 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 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 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 니다.</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 칙</p> <p>1)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 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 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 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 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 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p> <p>2)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 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 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Mutual Fund, REITs, ETF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Paper Company(해당 국가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p>	<p>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p> <p>1) ~ 2) 생 략</p> <p>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 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 칙</p> <p>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 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 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 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 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 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p> <p>2) 삭 제</p>
--	--

<p>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p> <p>3)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①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환차익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p> <p>②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이 평가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 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1)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2009년 말까지 35%, 2010년부터 33%)로 종합과세 됩니다.</p> <p>2)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p>	<p>3) 삭 제</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p>
---	--

	<p>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p> <p>(4) 생략</p> <p>※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회사의 경우 공모투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p> <p>(4) 생략</p> <p>삭제</p>
--	---	---